##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394

발의연월일: 2022. 11. 23.

발 의 자:이헌승·김기현·성일종

김선교 · 김형동 · 정운천

정동만 · 최영희 · 전봉민

김희곤 • 이주환 • 박성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최자가 명확한 경우에 주최자로 하여금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다중 밀집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함에 따라 관련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 하여 발생한 대형사고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축제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역행사로 세분화하여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경찰청 및 소방청 등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전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기초자치단체가 인구 및 차량 이동통행량, 범죄발생 현황,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대형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66조의11 및 안 제66조의12제3항 신설).

####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11의 제목 중 "지역축제"를 "지역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다음 각 호에서"로, "지역축제를 개최하려면"을 "지역행사를 개최하거나 주최자가 불분명한 다중밀집행사가 예상되는 경우"로, "지역축제가"를 "지역행사가"로,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지역행사 안전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역축제"를 "지역행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지역축제"를 각각 "지역행사"로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역축제"를 "지역행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역축제"를 "지역행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역축제"를 "지역행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역축제"를 "지역행사"로 한다.

- 1. 공연행사
- 2. 축제행사
- 3. 체육행사
-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
- 제66조의1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군·구의 장은 안전사업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이동통행량, 범죄빈도, 안전사고 빈도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의11( <u>지역축제</u> 개최 시 안	제66조의11( <u>지역행사</u> 개최 시 안
전관리조치) ① 중앙행정기관	전관리조치) ①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u>대통령령으로</u> 정하는 <u>지역</u>	<u>다음 각 호에서</u>
축제를 개최하려면 해당 지역	지역행사를 개최하거나 주최
<u>축제가</u>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	자가 불분명한 다중밀집행사가
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u>예상되는 경우지역행사</u>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u>가</u>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지역행사 안전관리계획</u>
	<b>.</b>
<u>&lt;신 설&gt;</u>	<u>1. 공연행사</u>
<u>&lt;신 설&gt;</u>	<u>2. 축제행사</u>
<u>&lt;신 설&gt;</u>	<u>3. 체육행사</u>
<u>&lt;신 설&gt;</u>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행사</u>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u>지역축</u>	<u> </u>
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실태	<u>역 행사</u>
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	
검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u>지역축제를</u>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u>지</u> 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u>지역축제</u> 안전관리계획 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 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지역축제</u>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 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u>지</u> 역축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 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③
지역행사
<u>지역행사</u>
<u>지역행</u>
<u>사</u>
<u>지역</u>
행사
<b>4</b>
<u>지역행사</u>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지역축제 안전관리 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등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및 지원) ① · ② (생 략) <신 설>

⑤
<u>지역행사</u>

제66조의12(안전사업지구의 지정 제66조의12(안전사업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군・구의 장은 안전사 업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이동 통행량, 범죄빈도, 안전사고 빈 도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 <u>다.</u>